의 정 정 보

2010 - 9호

2010. 9. 10.

1. 최근 타 시·도 제정 조례 …… 2

2.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 124

<참고1> : 추석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 139

<참고2> : 선거법 질의 답변 …… 146

<참고3> : 행복한 책 읽기 …… 148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법제자료담당관실 ☎(042)606-5021

▣ 최근 타 시·도 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2. 서울특별시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3.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안 ——— 11
4.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9
5.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 조례안 ——— 22
6.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7
7. 대구광역시 더 큰 대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9
8.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안 ——— 33
9. 대구광역시 옴부즈만 조례안 ——— 39
10.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 47
11.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 48
12.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 53
13.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 66
14.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70
15.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4
16.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안 ——— 77
17. 전라북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1
18.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86
19. 전라북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93
20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 97
21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 101
22.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안 ——— 107
23.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안 ——— 113
2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19

최근 타시·도 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262

발의연월일 : 2010년 6월 10 일

발 의 자 : 안희옥 외 13 명

1. 제안이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재산의 취득·보유 및 시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해 시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효율적·체계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일반·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이하 "재정투융자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금, 일반회계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매각대금, 사용·대부료 등 수입금 및 이자수입 등 그 밖의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함 (안 제2조)

나. 기금은 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비, 차입금의 상환, 재정투융자기금에의 예탁 및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에 사용함 (안 제3조)

다. 기금은 토지, 건물 및 그 종물의 취득에 사용하되,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의 취득에는 사용하지 못함 (안 제5조)

라.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재산운용기금운영심의회를 설치함 (안 제6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재산의 취득·보유 및 시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해 시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효율적·체계적 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이하 "재정투융자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
3.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금
4. 제5조제2항전단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이 관리하는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매각대금, 사용·대부료 등 수입금
5. 제5조제2항전단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이 관리하는 재산이외의 일반회계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매각대금, 사용·대부료 등 수입금
6. 이자수입 등 그 밖의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비
2. 차입금의 상환
3. 재정투융자기금에의 예탁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되,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되, 지출에 관한 사무 중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담당실·국·본부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사무관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 ①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및 그 종물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②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재산운용을 위하여 기금으로 취득(「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을 포함한다. 이하에서 같다)한 재산은 분임기금운용관이 관리하고, 업무주관부서에서 소관 사무를 위하여 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당 업무주관과장이 관리한다.

③ 제2항전단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이 관리하는 재산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금으로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취득·처분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운영심의회의 설치)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2항전단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목적달성 및 존폐여부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6.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7. 그밖에 기금의 결산보고 등 기금 운용을 위한 주요사항

제7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업무 소관 또는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2. 국ㆍ공유재산 및 부동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로서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4.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하거나 심의회의 자문에 응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2 서울특별시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244

발의년월일 : 2010년 6월 10일
발 의 자 : 김배영 의원 외 10명

1. 제안이유

급변하는 통일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지역 내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내 통일교육 활성화와 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안 제2조)

나.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안 제5조)

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의 반영(안 제 6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제6조제3항, 제6조의2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서울특별시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일교육의 지원)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내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 (통일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통일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통일교육 지원 사항의 총괄·조정
2. 통일교육 지원 사업의 선정 및 지원방법
3.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관련 위원회 시의원
2.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통일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시 교육청 관계 공무원

③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시장은 시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1223

제출년월일 : 2010년 3월 17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빛공해를 예방하고,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며 서울의 야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

하여 빛환경 정비 및 도시조명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에게 빛공해 방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조명환경 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위원회를 둠 (안 제5조)

라. 빛공해를 방지하고 도시조명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명환경 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옥외조명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빛방사 허용기준을 반영한 조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조명환경 관리지역별 상향광속률 및 건물표면휘도 등의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경관조명을 형성·정비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빛공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서울의 야경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수 경관조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조명의 과다한 빛방사로 인한 빛공해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의 도시조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의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빛공해”란 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과 누출광 등으로 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을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2. “도시조명”이란 도시의 공간과 대상물을 필요에 따라 기능적으로 적정하게 밝히는 조명을 말한다.
3. “빛환경”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빛 방사와 인공적인 빛 방사가 포함된 환경을 말한다.
4. “누출광”이란 인공조명에 따른 빛이 조명의 대상이 되는 범위 이외의 다른 지역의 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빛을 말한다.
5. “옥외조명”이란 실내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을 말한다.
6. “건축물벽부등”이란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인공조명을 말한다.
7. “시설물벽부등”이란 건물이 아닌 시설물 또는 구조물 벽면에 설치된 인공조명을 말한다.
8. “사설조명”이란 개인이 필요에 따라 설치한 옥외조명을 말한다.

9. “상향광속률”이란 조명기기 또는 조명장비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수평면 위를 향해 방사되는 비율을 말한다.
10. “건물표면휘도”란 조명기구에 의해 투사되는 빛이 건축물 표면에 반사되는 빛의 밝기 정도를 말한다.
11.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이란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 등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조명방식을 말한다.

제3조(시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빛공해 방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빛공해 방지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도시조명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에게 빛공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계획(이하 “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의 목표와 방향
2. 도시조명관리의 현황분석 및 빛공해로 인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4. 도시조명의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에 관한 사항

5.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촉진 대책
6. 빛공해 방지에 관한 교육·홍보 대책
7.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8.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빛공해방지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빛공해방지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빛공해방지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3. 조명환경관리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빛공해 방지 대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경관조명, 도로조명 등 용도별 조명계획 및 조명기구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건축물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미디어파사드 등)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의 빛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8. 제7조의 조명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의 서울디자인위원회를 말한다.

제6조(조명환경 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빛공해를 방지하고 도시조명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명환경 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1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 조명에 의하여 자연환경이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2. 제2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 조명이 동·식물의 생장 및 지역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3. 제3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 조명이 시민의 안전이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될 수는 있으나 지속적일 필요는 없는 지역
4. 제4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 시민의 활동영역이 어느 정도의 조명환경을 필요로 하는 지역
5. 제5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 시민의 활동에 높은 정도의 조명환경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역
6. 제6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 국내ㆍ외 행사, 관광진흥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매우 높은 정도의 조명환경이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 관리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 관리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조명환경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조명환경 관리지역에 대한 상향광속률, 건물표면휘도, 빛방사 허용기준, 지역 지정에 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조명계획) ① 옥외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규칙에서 정하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조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조명계획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조명기구의 설치기준) 옥외조명 조명기구의 눈부심 및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명기구의 설치위치, 조사각도, 등기구 설치높이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점등 및 소등 운영) ① 도로조명(가로등) 및 보안등의 점등 시간은 일몰 30분 후로 하고, 소등 시간은 일출 30분 전으로 통합적 또는 개별적으로 관리한다. 다만, 안개, 강우 등 기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별도로 점등 및 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공청사의 벽부등 및 주변에 설치하는 조명은 야간 환경과 보안성을 검토하여 관리청별로 점등 및 소등 할 수 있다.

③ 공공 및 민간이 설치한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과 건축물, 교량, 구조물 등에 조명기구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관조명의 점등 및 소등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도로조명의 균제도 유지) 시장은 쾌적한 도로교통환경 유지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 상의 조명의 균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제3항의 조명환경 관리지역별 상향광속률 및 건물표면휘도 등의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빛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선권고 등을 받은 자는 불합리한 조명시설의 정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제도) ①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명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의 조명환경 관리지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설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조명계획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경관법」제13조제1항제3호의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경관조명을 형성·정비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우수 경관조명상) ① 시장은 빛공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도시의 야경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드는 우수 경관조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우수 경관조명상 선정 및 시상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설치되어 운영 중인 조명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 사항

0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197

제출년월일 : 2010년 3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현재 운영중인 서울시 홍보대사 및 서울시민 홍보대사와 각 부서(기관)별로 위촉·활용하고 있는 특정임무 홍보대사를 포함하는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홍보대사의 위촉절차 및 임기와 해촉사유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나.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이나, 시정 홍보활동에 참여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경비 및 활동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안 제6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고객의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시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 · 운영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6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192

제출년월일 : 2010년 3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서울을 세계적 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창의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교육사업 수행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기업 및 대학 등과의 공동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다. 창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해 "서울 창의교육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라. 창의교육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 창의교육 시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마. 창의교육 추진기구로서 재단법인 "서울 창의 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창의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자 양성 등 창의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창의교육"이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시 소재 학교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재학 중인 학생

제4조(창의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 창의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1. 창의교육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창의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창의교육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에 관한 사항
4. 창의교육 수행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창의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창의교육사업 수행)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창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창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양성 및 연수
3. 창의교육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공동사업
4. 그 밖에 창의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창의교육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자치구, 대학 등에 대하여 창의교육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동사업추진 등)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대학,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서울 창의교육 자문단) ① 시장은 창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 창의교육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서울 창의교육 시민위원회) ① 시장은 창의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 창의교육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서울 창의 아카데미) ① 시장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 창의 아카데미(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11조(업무)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2. 창의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창의교육 담당교사 육성·연수 및 지원
4. 교육청·학교·기업 등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5. 창의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창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민법」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2.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회계 및 기금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제14조(기금)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15조(출연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및 재단의 사업수익금, 기부금품 등으로 한다.

제17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http://www.smc.seoul.kr]

⑨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98

제출년월일 : 2010. 3.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장 (국제협력담당관)

1. 제안이유

우리 시에 정주하는 외국인 자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외국인학교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외국인학교에 대해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등에 따라 지원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외국인학교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기능 : 외국인학교 지원시책 수립 및 예산지원 사항 심의 등

○ 구성 : 위원장(행정자치관)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임기 :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과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학교의 지원)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학교지원위원회) ① 부산광역시장은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외국인학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외국인학교의 지원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 또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학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부산광역시의회 http://council.busan.go.kr]

⓪ 대구광역시 더 큰 대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0. 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제안이유

시민과 함께 시정발전을 구상하고 실천적 전략을 마련하는 등 소통·통합 시정을 구현하고 「희망의 도시 일류대구」 건설을 위한 대구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더 큰 대구 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더 큰 대구 만들기 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사무직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4. 6. 30까지로 정함(부칙 제2조).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더 큰 대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함께 시정발전을 구상하고 실천적 전략을 마련하는 등 소통·통합 시정을 구현하고 「희망의 도시 일류대구」 건설을 위한 대구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더 큰 대구 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분야) 더 큰 대구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시정의 장·단기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새로운 정책발굴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소집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는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세미나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 산하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회의 조사 · 연구 등 자문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직원)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⑨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0. 9. .
발 의 자 : 이윤원의원 (찬성의원 6 인)

1. 제안이유

대구시의 각종 민원업무와 행정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착오와 처리지연으로 말미암아 시민이 겪는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보상함으로써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착오와 처리지연에 따른 보상금지급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나.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다. 민원보상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안 제12조)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각종 민원업무 및 행정처리과정에서 행정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를 말한다.
2. “민원”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해 요구하는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말한다.
3. “보상민원”이란 시의 행정착오와 처리지연에 따라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은 자가 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4. “행정처리”란 민원업무 또는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의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5. “행정착오”란 민원사무 처리시 단순・경미한 착오나 과실에 따른 착오등재, 착오통지, 부실기재, 복사부실 등을 말한다.
6. “처리지연”이란 민원사무처리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초과해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7. “시간적 불이익”이란 시의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하지 않아도 되었을 사무를 처리함으로 인해 낭비한 시간적 손실을 말한다.
8. “경제적 불이익”이란 시의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재산적 비용을 말한다.
9. “민원보상금“이란 각종 민원업무 및 행정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댓가로 지불하는 경제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대상 민원사무) ① 보상대상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무로 한다.

② 제1항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무원의 과실 또는 착오가 인정되거나, 보상민원을 청구하는 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불편에 대해서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 적용대상) ① 행정착오에 따른 보상금(이하 "착오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로 한다.

1.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공무원의 착오기재로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2. 관계공무원이 발급한 민원서류가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아 그 민원 서류를 사용할 수 없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3.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 업무착오로 일괄해서 요구하지 않고 추가 보완 해서 요구함으로써 수차례 방문하게 한 경우
4. 행사일정 통지 착오로 인해 방문한 경우와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고지가 잘못 고지되었거나 고지서 발급착오, 이미 납부한 자에 대한 공부 미정리로 인한 독촉장 발부 등으로 이의 시정요구 등을 위해 행정기관을 재 방문한 경우
5. 민원업무외 고유업무로 인한 공무원의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행정행위의 정정을 위해 공무원이 행정기관 방문을 요구한 경우
6. 이 밖에 민원사무의 착오로 인하여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주었다고 민원사무처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처리지연에 따른 보상금(이하 "지연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사무 처리기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로 한다.

제5조(보상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2.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3.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4.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제6조(보상금 수령) 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이하 "보상금 수령권자"라 한다)는 보상민원을 신청한 자로 하며, 2인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인 경우에는 선임된 대표자로 한다.

② 보상금 수령권자는 민원인이나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직계존비속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신 수령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액) ①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각 호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다.

1. 대구시내 거주자(달성군 제외) : 건당 10,000원
2. 달성군 및 대구시 인접 시·군 거주자 : 건당 20,000원
3. 그밖의 타시도 거주자 : 건당 30,000원

② 제4조제1항5호에 따른 보상금은 실비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상금은 현금 또는 상품권 등 환금성있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 및 지급)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원처리 완료시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인에게 행정착오 등이 발생했음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보상을 신청한 경우 보상신청서와 민원보상사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상신청서에는 우편이나 송금 등 민원인이 보상을 수령하는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상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민원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보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민원보상과 관련한 다툼과 보상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민원보상의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민원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민원보상 기본계획 수립
2. 민원보상과 관련한 다툼의 조정
3. 보상기준의 정함이 없는 민원보상금의 산정
4.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업무로 부여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 종합민원 관련부서 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민원보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기타, 시장이 민원보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종합민원 관련부서 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타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⑰ 대구광역시 옴부즈만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0. 7.
발 의 자: 이재술 의원 **(찬성의원 인)**

1. 제안이유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제도인 옴부즈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의 기능, 직무관할, 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내지 제5조)

나. 옴부즈만의 설치, 신분보장,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다. 옴부즈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내지 제11조)

라. 고충민원의 신청 및 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12조 내지 제20조)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옴부즈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제도인 옴부즈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옴부즈만(이하"옴부즈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이 제3조 각 호의 기관이 행한 행위로 고충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스스로의 발의에 따른 사안의 채택조사
3.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4.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5. 시정을 감시하고 비위의 시정 등을 조치(이하 "시정 등의 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권고
6.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7. 기타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와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제3조(직무관할) 옴부즈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자치구·군(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교육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4.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5. 시의 민간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제4조(활동 제한)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5조(옴부즈만의 책무) ①옴부즈만은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옴부즈만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옴부즈만은 그 지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옴부즈만의 설치) ①옴부즈만은 대구광역시의회에 둔다.

②옴부즈만은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옴부즈만은 고충민원과 감시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임용한다.

1.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변호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옴부즈만의 채용계약, 채용기간 등 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신분보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동안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8조(겸직 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정당과 관련된 직위
2. 행정기관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옴부즈만 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옴부즈만 임용기간으로 한다.
③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옴부즈만 중 선임자 순으로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운영위원장이 사전에 직무대행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지명된 옴부즈만이 우선하여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옴부즈만의 직권에 의한 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조사·평가 등에 관한 최종결과보고서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이 있는 경우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자문위원회 구성 등)①옴부즈만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시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시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③고충민원의 신청은 대리인으로도 할 수 있다.

제13조(고충민원의 이첩)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조사) ①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옴부즈만이 조

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옴부즈만은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할 수 있다.

③옴부즈만은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고충민원 조사방법) ①옴부즈만은 제14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②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옴부즈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권고 및 의견 표명) ①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제도개선 등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고충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조치결과의 통보) ①제16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 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통보받은 고충의 조사결과를 고충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옴부즈만은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공표 등)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18조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18조 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②기타 고충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사무기구) ①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사무기구직원은 옴부즈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③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

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민원조사 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④전문조사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공인의 사용) ①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문서 등에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대구광역시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운영상황 제출) 옴부즈만은 매년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대구광역시의회 http://council.daegu.go.kr]

❀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의안 번호	622

제출연월일 : 2010. 2. 4.
제 출 자 : 전병배 의원외 5인

1. 제안이유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

2. 주요내용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안 제2조).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1.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대전광역시의회 http://council.metro.daejeon.kr]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528

발의연월일 : 2010. 6. 8
발의자 : 이은주, 이재현, 홍종필, 송미경의원(4명)

1. 제안이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학생에게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지역 인재육성 및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자금 이자지원", "고등교육기관", "울산광역시대학생", "금융기관"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시기와 지원방법 등에 관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함(안 제3조)

다.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조건·규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자금 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소 변경 등으로 수급자격을 상실할 경우 이자지원을 중단토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울산광역시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울산광역시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3. “울산광역시 대학생”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인학생으로서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장 학자금 이자지원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련대학 총장·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학자금 이자지원) ①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생중 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거치 기간중 발생한 대학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조건·금액·한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 제1항제5호에 따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

제5조(설치)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조건·규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 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소속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학식과 덕망이 있는 대학교육 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4. 대학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5. 시민단체 대표 등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중복금지 및 수급자격의 정지

제13조(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14조(수급자격의 정지) 수급자로 확정된 자가 주소 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울산광역시의회 http://www.council.ulsan.kr]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의 안 번 호	44

제출연월일 : 2010년 6월 7일
(승계연월일 : 2010년 9월 1일)
제 출 자 : 경기도교육감

1. 제안이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제4조)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목적, 학생 인권보장의 원칙, 교육감·학교설립자·학생의 책무를 확인

나. 학생의 인권(안 제5조~제27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교에서의 체벌금지,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는 한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을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보장

다. 학생인권의 진흥(안 제28조~제38조)

학생인권의 날 지정, 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교원에 대한 인권연수 및 보호자 교육, 교육감의 학생인권실태조사, 교육감의 학생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업무,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견 제출, 교육감은 2년 주기로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 조사 및 개선조치 실시, 학생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 구축 및 지원

라.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안 제39조~제45조)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및 겸직금지,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및 복무,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설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권 명시

마. 보칙(안 제46조~제47조)

학교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교육감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바. 부칙

조례 공포 후 6개월 이내 학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학생의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

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자원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

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과 교육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2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8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29조(홍보)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를 일반인용,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으로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근로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3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5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④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⑥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7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명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0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1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3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사무기구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을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기구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과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조사한 후에 본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시정권고 등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본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5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1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4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제39조에 따른 상임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을 비상임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6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6

제출연월일 : 2010년 7월 일
제 출 자 : 경기도교육감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주민은 누구나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경기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3. 경기도교육감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주민참여 예산의 의견 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설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경기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다만, 경기도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한함.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연구회 운영 등)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027

발의연월일 : 2010년 4월 일
발 의 자 : 박명희·최점숙 의원외 17명

1. 제안이유

경기도가 의학의 발달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장기등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이 활성화되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4조)

나. 도지사가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 희망자 및 장기등 이식 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기이식등록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의 등록기관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도지사는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라.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장기등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등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등이식등록기관 운영)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 희망자 및 장기등 이식 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등록기관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 운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기도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
2. 경기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의 감면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등 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기기증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밀의 유지)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등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기등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등기증자와 적출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3. 장기등 기증희망자 및 장기등 이식 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992

발의연월일 : 2010년 3월 일
발 의 자 : 이남옥 의원 등 15명

1. 제안이유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지사는 아파트의 품질을 검수하여 견실한 아파트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 직속의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품질검수 위원은 건축, 구조, 시공, 설비, 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1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해 품질검수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검수반을 구성·운영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기능으로 아파트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의 시정 자문 등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아파트 품질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군수가 승인한 분양 아파트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파트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품질 검수를 통하여 견실한 아파트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도에 아파트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검수단은 12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반은 해당 아파트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검수반은 아파트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건축·구조·시공·설비·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도지사는 아파트품질검수업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검수반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제4조(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파트 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등의 시공상태 자문

2. 아파트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아파트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아파트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자료의 요구 등) 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군수가 승인한 분양아파트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자료출처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⑥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0년 6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가. 도와 시·군정의 감시기능과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 종전의 「강원도 애향파수관제 운영 규정」과 「강원도 명예감사관제 운영 규정」은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명예감사관의 임무를 정함.(안 제2조)

- 감사 관련 사항 등의 제보
- 감사 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직접 감사 또는 자문

나. 명예감사관의 자격, 준수사항, 위촉 등의 절차를 정함.(안 제3조~제7조)

다. 제보사항을 관리하는 방법을 정함.(안 제8조)

라. 명예감사관이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와 시·군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강원도 명예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강원도 명예감사관(이하 "명예감사관"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임무는 별도로 위촉되어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명예감사관에 한정한다.

1. 감사 관련 사항 등의 제보
   가. 사건·사고·집단행동 등 지역동향 제보
   나. 시책이나 사업·공사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다. 주민생활 불편·불만 사항
   라. 공무원과 공사·공단 임직원의 비위 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감사 관련 정보 사항 등
2. 「강원도 행정감사규칙」 제4조에서 정한 일상감사·부분감사·종합감사 기간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
   가. 감사 수행과정에 참여 또는 자문
   나.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처분 등의 시정 권고
   다. 감사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권고 또는 의견 제출

제3조(자격 및 위촉) ① 명예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이 많은 지역주민 또는 사회단체 인사
2. 지방행정 및 주민불편·애로사항을 잘 아는 퇴직공무원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적격자라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자를 직접 발굴하여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감사관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감사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명예감사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위촉인원은 읍·면·동별로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인원의 40퍼센트 범위를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해당 감사 기간으로 한다.

제5조(품위유지 및 비밀준수) ①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명예감사관의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감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촉 해제) 도지사는 명예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읍·면·동)으로 이주한 경우
2. 위촉 후 1년 동안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보 및 자료관리) ① 제2조에 따른 명예감사관의 제보는 형식과 방법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부서)과 협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지원 등)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는 명예감사관이 제2조에서 정한 임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2. 정기 연찬회 및 시·군 간담회 개최
3. 우수 명예감사관 포상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4. 명예감사관 활동수첩 등 제작·배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당 등) 명예감사관이 연찬회 등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강원도 애향파수관제 운영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원도 명예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자료출처 : 강원도의회 http://council.gangwon.kr]

전라북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57

발의연월일 : 2010. 8. .
발 의 자 : 조병서의원외 8인

1. 제안이유

법질서 확립 및 지역치안을 유관기관과 범도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정당성 및 예산 확보 등 행·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설치(제2조)

- 전라북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북도 치안행정협의회를 둠

-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제고를 위해 "실무 및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음

나. 역할(제4조)

-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등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 법질서 확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다. 구성(제5조)

- 협의회는 위원장(도지사) 및 부위원장(도의장, 교육감, 경찰청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라. 간사(제9조)

- 간사는 전북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함

마. 치안협력 사업(제13조)

-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지역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치안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① 전북지역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으로 전라북도 치안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실무 및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다문화 가정·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제4조(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등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 전라북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 전라북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전북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도내 기관·단체의 장
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각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선출 및 임무) ①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기타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들이 상호 협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제9조(간사) 간사는 전북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협의)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전북지방경찰청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2조(분과협의회)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3조(치안협력 사업)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462

발의연월일 : 2010. 3. .

발 의 자 : 김윤덕 외 17인

1. 제안이유

○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공동체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권에 관한 도지사 책무(안 제4조)

1) 인권보호와 증진, 침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2)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형사 사법기관에 알리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나. 인권옹호기본계획수립 및 인권옹호위원회 설치(안 제6조 및 제7조)

1)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권옹호계획을 수립 할 수 있음

2) 인권정책에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인권옹호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다. 인권센터의 설치(안 제19조)

-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관련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라. 인권교육 실시(안 제21조)

-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전라북도조례 제 호

전라북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도민의 인권보호와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 하고 지역공동체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정책"이라 함은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조례 등의 연구와 계획의 수립과 집행,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시책·방침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전라북도와 시·군 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권보호와 증진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1. 인권 최대한 보장의 원칙
2. 인권 보편성 유지의 원칙

3. 인권 친화적 정책의 원칙
4. 도민 참여형 인권실현의 원칙
5. 인권 비용 공적 부담의 원칙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인권 보호와 증진, 침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형사 사법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기본적 인권) ① 모든 도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도의 인권정책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도민은 인권 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 피해의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권리는 도민이 아니지만 도의 행정구역 내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된다.

제6조(인권옹호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권옹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시책과 사업의 계획
2.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

혼이주자, 새터민,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인권약자의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계획
3.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기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인권옹호위원회의 설치) 도지사의 인권정책에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인권옹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자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자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자
5. 그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제9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인권 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대한 조언
2. 인권보장과 인권옹호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따른 실천과제 발굴
4. 인권센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 의결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기타 인권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가 그 업무로 선정한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도지사는 위원에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
3. 위원이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힐 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분과의 설치 · 운영) ①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4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5조(출석·발언의 요구, 공청회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일정할 때에는 도, 시, 군, 기타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7조(실비보상, 운영비)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전라북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도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비밀 준수) 공무원 및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인권센터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관련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인권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인권센터에 센터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활동
2.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
3.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4. 기타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④ 인권센터장은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타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인권센터의 재정)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인권교육 실시) ① 도지사는 공무원 기타 공공기관의 구성원 등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가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1. 각급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정보조 등을 받는 복지시설 및 인권 관련 기관은 해당 기관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제22조 (인권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인권센터장은 제2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인권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권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 (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과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할 수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의 시기) 이 조례 제7조가 규정하는 전라북도 인권옹호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 전라북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51

발의연월일 : 2010년 3월 일
발 의 자 : 이상현의원외11인

1. 제안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전라북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도지사 및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전라북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도지사는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7조)

라. 이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은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전라북도조례 제 호

전라북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전라북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 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 · 교육기관 · 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라북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해당 시·군,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질적 제고
2.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4.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 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
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전라북도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이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전라북도의회ttp://www.assem.jeonbuk.kr]

※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조례안

의 안 번 호	16

제출연월일 : 2010. 7. 6.
제 출 자 : 전라남도지사

1. 제안이유

상징물 관리체계 미비에 따른 임의사용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상징물 사용절차를 명시해 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세외수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 관리 근거를 통합하여 규정
나. 상징물 관련사업, 사용승인, 사용료(상품의 종류) 등 사용절차 명시
다. 위반시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함

전라남도조례 제 호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도를 상징하는 도기, 슬로건, 캐릭터, 동·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기 : 별표 1
2. 슬로건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도화(道花) : 동백
5. 도목(道木) : 은행나무
6. 도조(道鳥) : 산비둘기
7. 도어(道魚) : 참돔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도민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1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전라남도 이미지 통일화사업 디자인 매뉴얼」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문장·휘장) 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3. 도의 공공시설, 도유 및 도관리 물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의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도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도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도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인에 대한 사용료의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도 상징물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해당 수익사업 총매출액의 5퍼센트 이내
2. 수익사업 외 행사 등 사용 : 1회 1건당 10만원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도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심의·의결) 도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 도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8조 규정에 따른 사용(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기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자료출처 : 전라남도의회 http://www.jnassembly.go.kr]

❀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430

제안연월일 : 2010년 3월 19일
발 의 자 : 장경식 의원 1인

1. 제정이유

경상북도가 도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내 모든 구성원이 상호협력하여 건강도시를 만들고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도지사와 도민, 사업주 등의 책임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도지사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7조)

다. 건강도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안 제8조부터 제13조)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도민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임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가 설치·관리하는 건강증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사업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음식·물·주거·환경·안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 되도록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군의 환경을 건강하고 친환경적으로 보존하고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공동체가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④ 도지사는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시·군의 건강도시 사업을 지원한다.

⑤ 도지사는 모든 도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및 경험, 보건환경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
2.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범사업 등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국제기구, 국가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건강도시 네트워크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도민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도민참여 및 의견제시) ① 모든 도민은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사업의 추진과정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의 방향 제시 및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 개인 등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상북도의 도민 건강증진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3.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1명
4.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관계 공무원은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공보건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지원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와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 본인의 사임요청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질병으로 위원회 참석 및 활동이 어렵게 된 때
2. 장기간 외국체류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경상북도의회 http://council.gb.go.kr]

※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668

발의연월일 : 2010. 4. 26
발 의 자 : 김해연·김윤근·명희진의원

1. 제안이유

도내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시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의 추진 및 재원마련과 어린이의 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개인·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보호자는 어린이에 대한 가정의 무관심·억압 등이 원인이 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수립·시행하여 하며,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 위원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14조)

마.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어린이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15조)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수난(水難)·추락·약취·유인·성폭력·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도민과 어린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시책 추진 및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어린이의 안전 및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보호자 및 도민의 책무)① 보호자는 어린이에 대한 가정의 무관심·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에 대한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어린이의 안전 관련 민간단체 등의 육성·지원
4.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
5. 어린이의 안전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사업의 보조 등)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2. 어린이의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의 안전사고 관련 주요시책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3. 국내외 어린이의 안전동향 및 관계 전문의견
4. 어린이의 안전사고에 대한 의견수렴 및 종합적 대응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의원
2. 어린이의 안전 관련 담당 국장
3. 어린이의 안전 관계 기관·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4. 그 밖에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어린이의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어린이의 안전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남도 인권증진 조례안

1. 제안이유

도민의 인원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 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경상남도 인권증진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권 보호와 증진 및 관련 시책 발굴과 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인간의 존엄, 평등권,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등 도민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의 인권 증진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인권 증진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바. 경상남도 인권증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경상남도조례 제 호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도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 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

의 근거를 명시하고, 경상남도 인권증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 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도민”이란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도내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 등 도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 등)① 도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5조(기관 및 단체 지원)① 도지사는 교육기관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과 아울러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언론기관이 도민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인권 존중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민간단체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권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2.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 계획
3. 공공시설의 인권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4.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2항제2호의 인권약자 인권 보호·증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행정부지사,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도의회의원
2. 인권약자 권익 증진 관련 단체대표 및 대학교수
3.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2회 정기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비밀누설금지)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위원의 해촉)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8조(수당 등)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준용)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경상남도의회 http://law.gndo.kr]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0. 6. 4
발 의 자 : 오정희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안이유

최근 경기침체로 주민들이 경제 및 생활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행정 등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통해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담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상담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상담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상담관이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상담처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및12조).
바.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행정 등 전문분야의 무료상담을 통해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주민상담실을 설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담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외부전문가 또는 담당직원으로서 상담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2. “상담자”란 상담을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상담실의 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행정시 청사 안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2.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된 각종 세무상담
3. 그 밖에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

제6조(상담실의 운영) ① 상담대상은 주민, 공무원, 기업체 운영자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과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7조(상담 방법) 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전자우편·복사전송 또는 인터넷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담 분야와 상담 시간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상담책임관 및 간사) 상담책임관은 상담소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상담관) 상담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분야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관련학과 교수, 관련 공무원 등
2. 세무분야 : 회계사, 세무사, 관련학과 교수, 관련 공무원 등
3. 행정분야 등 : 공무원 중 공로연수자 등 관련분야에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도지사가 지정한 자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상담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가능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이 어려운 경우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우편·전자우편·복사전송 또는 인터넷 상담은 상세하게 우편·전자우편·복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 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배석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시정조치) ① 상담한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상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상담책임관, 행정시 자치행정국장 2인, 상담관 3명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제5조에 따라 상담한 내용의 정확한 기록을 위하여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니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제주도의회 http://www.council.jeju.kr]

▣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1. 가을철 발열성 전염병 주의 ——— 124

2. 땅속 1300Km 송유관을 지켜라 ——— 126

3. 올해 첫 일본뇌염환자 발생 ——— 127

4. 온·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특허청 형사처벌 강화한다. ——— 132

5. 조달청, 중소기업 살리기에 앞장선다 ——— 134

⧖ 가을철 발열성 전염병 주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가을철발열성전염병(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환자가 매년 주로 9~11월 사이에 발생**한다고 하면서,

- 국민들에게 각종 야외 활동(벌초, 야유회, 등산, 밤 줍기, 텃밭 가꾸기 및 논밭과 과수작물 추수)시, 개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실천하고,
- **야외활동 후 두통, 고열, 오한과 같은 심한 감기증상이 있거나, 벌레에 물린 곳이 있으면 지체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쯔쯔가무시증 다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예방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샵을 2010년 9월 8일 대전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발열성전염병이 비록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최근 **강수량 증가 및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 쯔쯔가무시증의 경우, 설치류에 기생하는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전파되며, 9~11월에 집중되고 '06년 6,480명, '07년 6,022명, '08년 6,057'명의 '09년 4,995명이 발생하였다.

-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며,
- 지구 온난화에 따른 겨울철 기온 상승으로 쯔쯔가무시증과 같은 매개체 전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쯔쯔가무시증 예방법>

-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놓고 눕거나 잠을 자지 말 것
- 휴식 및 새참 먹을 땐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릴 것
- 작업 중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말 것
- 작업 시 기피제 처리한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를 신을 것
- 밤따기나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뿌리거나 긴 소매, 양말을 착용 할 것
- 작업 및 야외활동 후에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여 진드기를 제거할 것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작업복, 속옷, 양말 등 세탁할 것

○ 렙토스피라증의 경우, '06년 119명, '07년 208명, '08년 100명의 '09년 62명의 환자가 보고되었으며

-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 토양에 노출 시 상처 난 피부를 통해 감염된다.
- 최근 계속되는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침수지역에서 벼 세우기 작업 등으로 오염된 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렙토스피라증 예방법>

- 논이나 고인 물에 들어갈 때는 장화 및 고무장갑을 꼭 착용할 것
- 태풍, 홍수 뒤 벼 세우기 작업 시에는 장화 및 고무장갑을 착용할 것

○ 신증후군출혈열의 경우, '06년 422명, '07년 450명, '08년 375명, '09년 334명의 환자가 보고되었으며

- 감염된 설치류(등줄쥐, 집쥐)의 타액, 소변, 분변이 공기 중 건조되어 비말형태로 사람에게 감염된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법>
- 들쥐의 똥, 오줌이 배설된 풀숲(오염지역)에서 휴식이나 야영하지 말 것
- 주변에 불필요한 풀숲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할 것
- 풀밭이나 들에서 야영,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예방접종을 합시다

⚠ 땅속 1300Km 송유관을 지켜라

최근 미국 멕시코만의 유전 폭발, 중국 다롄(大連)의 송유관 폭발로 인한 원유 유출은 자연생태계 및 해양 생물 서식지를 파괴시켜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장기간의 복구가 필요한 후유증을 남겼다.

원유 수송은 크게 해상운송 또는 육로 운송으로 이루어지는 데, 해상 운송은 유조선을 이용하고, 육로 운송은 송유관이나 차량을 이용한다. 그 중 19세기 말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송유관은 원유 배달을 위한 땅 밑 고속도로라 불리며, 교통 상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현대화한 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송유관은 파이프 부식 등 노후화로 기름이 유출될 경우, 토양과 하천 및 지하수 등의 오염 우려가 높고, 오염 지역의 환경 복원에도 오랜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송유관의 기름 유출을 정확하고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송유관의 기름 유출을 감지하는 기술관련 특허출원이 2004년 이전에는 18건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출원이 증가하여 2005년~2009년 사이에 50건이 출원되었다.

이들 출원기술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감지선을 사용하는 기술이 22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센서, 유량변화, 압력 변화 등의 감지 기술 순으로 출원되고 있다.

특히 유량 변화, 압력 변화 등으로 기름 유출을 감지하는 기술의 출원은 2004년 이전에는 3건에 불과하였으나, 출원이 증가하여 2005년~2009년에는 18건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땅속에는 약 1,300km 길이의 송유관이 묻혀 있어 수입된 원유와 5개 정유사 공장의 석유 제품을 전국 주요 도시의 저유소(유류 저장소)와 공항까지 배달하고 있다. 송유관을 통한 운송량은 유류의 연간 총 사용량중 53%인 1억 3300만 배럴에 이른다.

전 세계는 국경을 초월하여 원유 또는 석유 제품을 생산지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수송하는 송유관을 그물망처럼 매설중에 있으며, 송유관의 운송비중 확대에 따른 환경오염 및 국가간 갈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송유관의 기름 유출 관련 특허출원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0 올해 첫 일본뇌염환자 발생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이종구)는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 강원지역에서 발병한 71세(여) 환자는 지난 8월11일부터 발열,

설사, 구토 증상을 보이다 이후 의식저하 등 신경과적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이다.

※ 역학조사 결과 집 주위에 동물축사 등 위험요인은 없는 환경이었으나 가정 내 방충망이 허술해 평소 모기에 자주 물렸다고 함

○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에 대한 혈청검사 등 정밀검사를 통해 일본뇌염 확진 환자로 최종 판정(9월8일)하였다.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유행예측사업' 결과에 따라 지난 4월과 7월에 일본뇌염 주의보(4.13일)와 일본뇌염 경보(7.30일)를 각각 발령한 바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9월까지는 모기의 활동이 활발하므로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모기장)을 사용하고, 특히 야외 활동 시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곤충 기피제 사용, 긴 팔, 긴 바지 옷 착용) 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 만 12세 아동은 표준 일정에 맞추어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고했다(총 5회 접종).

<참고자료 1>

□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

○ 질병관리본부는 국립보건연구원, 전국 12개 보건환경연구원 및 27개 보건소와 공동으로 일본뇌염 유행예측을 위해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의 발생을 전국 단위로 감시하고 있으며,

○ 2010년도는 제주 지역에서 4월 13일 채취한 모기 중에서 최초로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확인함에 따라 주의보를 발령하였고,

- 7월 30일에는 전남지역에서 채집한 모기 중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의 50%이상임을 확인해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였음

[2010년 전국 및 일본뇌염 매개모기 발생현황]
34주(8.15-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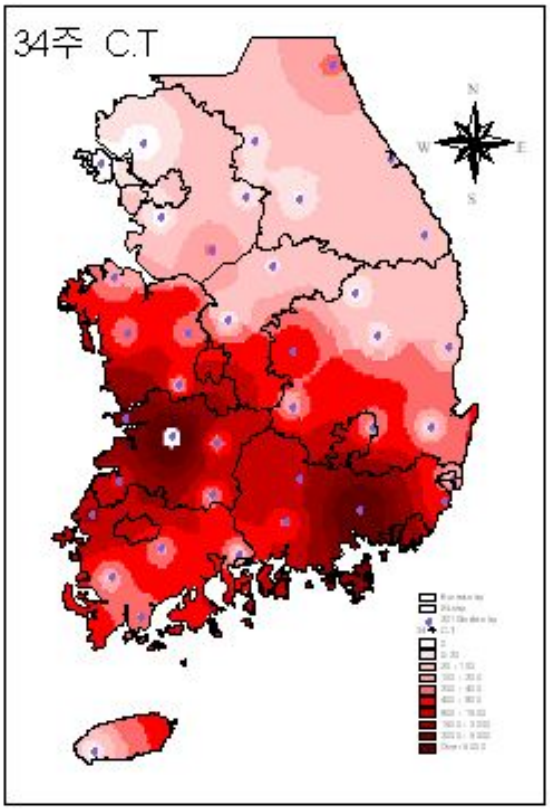

<작은빨간집모기(CT)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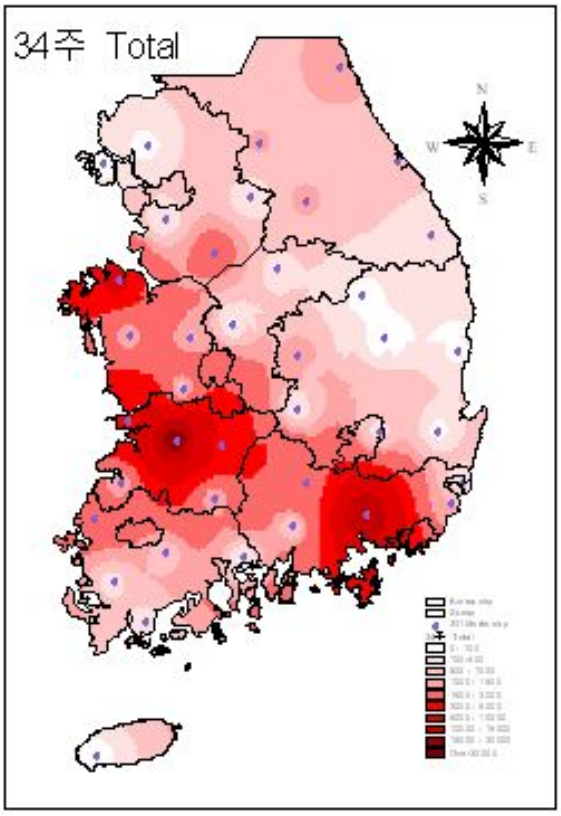

<전체 채집 모기 분포>

[연도별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발령일, 환자 발생현황]

연 도	'05	'06	'07	'08	'09	'10
주의보 발령일	4.26	4.14	4.20.	4.18	4.29	4.13
경보 발령일	8.4	7.21	7.26.	7.25	7.23	7.30
환자발생수(명)	6	-	7	6	6	1

□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

① 주의보 발령 :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채집 시

② 경보 발령 : 다음 4가지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시

- 특정지역에서 1일 저녁 채집된 모기 중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500마리 이상으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일 때
- 채집된 작은빨간집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
- 돼지 항체가 양성률이 특정지역에서 50%이상인 경우 또는 돼지혈청에서 IgM (초기항체)이 검출되는 경우
-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참고자료 2>

일본뇌염 관련 Q&A

Q 1. 일본뇌염이란 어떤 질병인가요?

A 1.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렸을 경우 혈액내로 전파되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으로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급성 전염병으로, 뇌염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고, 후유증의 발생이 높은 질병입니다.

Q 2. 일본뇌염의 임상적 특성은 어떠한가요?

A 2.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5%는 무증상이며 일부에서 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극히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 초기에는 고열, 두통, 구토, 복통, 지각이상
- 급성기에는 의식장애, 경련, 혼수, 사망에 이를 수 있고
- 회복기에는 언어장애, 판단능력저하, 사지운동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3.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리면 일본뇌염이 발생하나요?

A 3. 모든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일본뇌염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뇌염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경우 극히 일부에서 일본뇌염이 발생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매년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일본뇌염모기가 발견될 경우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합니다.

Q 4. 일본뇌염 환자와 접촉하면 일본뇌염에 걸릴 수 있나요?

A 4. 일본뇌염은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를 일본뇌염 모기가 흡혈한 후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전파됩니다. 그러므로 일본뇌염 경보가 발생하면 모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새벽과 해가 진 무렵 저녁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5. 일본뇌염 매개모기 유충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A 5. 일본뇌염 매개모기는 주로 논과 연못, 관개수로, 미나리꽝, 빗물고인 웅덩이 등 비교적 깨끗한 물에서 서식합니다. 모기 구제는 성충보다는 유충구제가 더욱 효과적이므로 거주지 주변 웅덩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방제하도록 합니다.

Q 6.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언제 받나요?

A 6. 매년 여름철에 맞아야 하는 계절접종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생후 12~24개월부터 시작해 일정에 맞춰 총 5회 접종받는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기초접종 3회와 만 6세, 12세에 각각 1회씩 추가 접종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생백신은 3회 접종).

- 기초접종(3회) : 1차(생후 12～24개월), 2차(1차 접종 후 7～14일 사이), 3차(2차 접종일로부터 12개월 후)
- 추가접종(2회) : 4차(만 6세), 5차(만 12세)

◊ 온·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특허청 형사처벌 강화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위조상품, 소위 짝퉁상품의 제조·유통·판매에 대한 단속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권」 업무를 새로 도입·수행하게 됨에 따라, 오는 9월 8일 오전 11시에 정부대전청사(3동 204호 대회의실)에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발대식」을 개최하고,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의 공식적인 출범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채동욱 대전고검장, 전호석 현대모비스 사장(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등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한다.

종전의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활동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각 시도의 시장이나 상가에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적발하여 시정권고 등 행정지도 조치에 그쳤다. 그러나 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주어지면서 특허청의 상표권 경찰들이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위조사범들을 직접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조상품의 제조·유통·판매업자에 대한 특허청의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로서 지식재산권의 창출면에서는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식재산 강국이라고 자랑하지만, 최근 5월에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수준은 전체 58개국 중 32위(2009년 33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명성을 무색케 했다.

이렇게 지재권 보호수준이 낮게 나온 이유 중의 하나는 아직도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위조상품 소위 짝퉁상품이나 해적판 불법 복제물의 유통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조상품의 유통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기업의 고유브랜드 개발과 정품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하여 외국의 기술이전이나 투자자본 유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산업계나 소비자단체, 외국투자기업 등으로부터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강화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특허청은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추진한 결과, 지난 4월 27일 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법률(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요원들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아 이번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현재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대 조직은 서울(수도권 관할), 대전(충청호남권 관할), 부산(영남권 관할) 등 3개의 지역사무소로 구

성되어 있으며, 총 15명의 특별사법경찰들이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시·도 지역의 시장이나 상가의 위조상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에 일임시키고, 특허청은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유통·판매업자에 대한 압수·구속 등 형사처벌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해서 판매사이트 폐쇄뿐만 아니라 IP추적 등을 통하여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검거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하여 특허청은 금년 하반기에 디지털 범죄 수사장비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고 IP추적시스템을 구축한 후 내년부터 온라인 전담 사이버 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조직과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조달청, 중소기업 살리기에 앞장선다

□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경제회복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9월 1일 밝혔다.

□ 조달청은 그 동안 물품구매의 **70% 이상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고, 조달물자 대지급, 선금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 중소기업들이 아직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 대지급 실적 : ('09.7) 53,079억원(26.4%) → ('10.7) 76,231억원(66.5%)

* 계약대금 선금지원 실적 : ('08) 2,565억원 → ('09) 4,826억원 → ('10.7) 3,688억원

□ 이번에 마련한 지원 확대방안은 **▲중소·지역기업 조달참여 확대, ▲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 등 우대, ▲적정한 조달가격 보장, ▲원자재 수급지원 등의** 4대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지역기업 조달참여 확대

○ **물품구매 분야에서는**

- 20억원 이상 표준제품(조달청장이 지정한 레미콘, 아스콘 등 20개 제품) 구매시 정부 조달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하기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하고,

* '중소기업 컨소시엄간 경쟁입찰제도' 8.18일부터 旣 시행

- **영세 가구업체들이 MAS 2단계 경쟁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사계약 분야에서는**

-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등급제한 공사에서 해당등급 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분율을 곱하지 않고) **시공경험을 모두 인정**하여 상위 등급 업체와 공동도급 없이도 수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현재 등급제한 공사는 대표자가 50% 이상 시공참여하는 경우 대표자의 실적은 모두 인정하나 구성원의 경우는 지분율 만큼만 인정

- 지역업체의 조달참여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시공참여율에 따른 가점(6~12%) 부여 대신 **평가항목으로 신설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배점제'를 추진**한다.

* 현재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6~12%)을 부여하고 있어 가점이 없어도 PQ 통과가 가능한 업체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할 필요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② 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 등 우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물품을 2천만원 미만 구매**할 경우 **장애인기업도 수의계약 상대자로 추천**받을 수 있는 장애인기업 소액추천제를 도입하고,

* 현행 추천 우선순위 : 수요기관 추천, 여성단체 추천, 지역제한 견적시담

○ **사회적기업**, 출산장려·양육지원 등 **가족친화 인증기업**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우수기업**의 낙찰기회 확대를 위한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도 도입한다.

* 사회적 기업 1점, 가족친화인증 기업(0.25~1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기업(0.5점)

○ 아울러,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방법을 중소기업이 달성하기 용이**하도록 신규고용율 평가로 단순화하여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우대**를 강화한다.

* 현재는 신규 고용율 및 고용인원을 모두 충족해야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어 종업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신규 고용 인원 충족이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③ 적정 조달가격 보장

○ 상대방을 배제하기 위한 원가이하의 가격경쟁이 일반화된 **MAS 2단계 경쟁에서 낙찰하한을 계약가격의 80% 이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압박과 생산제품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 2단계경쟁시 계약가격 대비 80% 미만 제안건수 비율
: ('08) 1.3% → ('09) 8.8% → ('10.5) 17.9%

○ 중소·지역건설업체의 **채산성 제고**를 위해 공사비 산정시 **자재자격·간접노무비·각종 제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④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

○ 마지막으로 국제적 공급장애 발생시 고정거래선과 내부 구매조직이 없어 **위기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조업 지원**을 위해,

- 비축품목 선정시 **중소기업 수요 품목을 우선 비축**하고, **비축량을 확대**하는 한편,

* 현재 비축목표량은 비축품목의 구분없이 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으로 일률적으로 설정

- **중소기업에 대한 원자재 방출시** 업무특성·긴급성·국익 기여도 등을 고려한 **방출 우선순위에 따라 방출**한다.

□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이번 방안에서는 대형 납품건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기업이 **그동안 참여할 수 없던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빗장을 제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과 함께 **품질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이 **경쟁력있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추석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1. 의례적인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 · 단체 · 시설의 직원 제외

-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를 포함)에게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 추석인사·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을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 등을 당해 사무소에 게시·설치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귀향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의 사진, 자신을 지지 · 선전하는 내용의 게재는 불가

❍ 지방자치단체가 귀성 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청사를 벗어난 장소에 게시 불가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E-mail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추석인사를 하는 행위 등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E-mail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가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구민에게 추석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귀성인사를 위하여 정당 명의 또는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 신문·방송·잡지 기타 간행물에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호소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 등

2. 구호적·자선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 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 · 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외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 · 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 금지

할 수 없는 사례

❍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

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3. 직무상·업무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위
-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자선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가 국회(지역사무소 포함)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

4. 통상적인 정당활동 관련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 및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등

  ※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제외

할 수 없는 사례

- 추석인사 등을 빙자하여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당원단합 등을 명목으로 단합대회·수련대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식사·선물·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자료출처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http://cn.election.go.kr]

<참고 2>

기업의 수익금을 고객의 명의로 특별당비 납부

《질 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당원이 정당에 특별당비를 납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신속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사항** : 기업이 특정 서비스상품에 대한 가입이나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그 수익금(또는 구매자가 담보책임을 지는 장차 발생할 수익금) 중 일부를 그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속한 정당에 물건의 구입인 또는 서비스 가입인의 명의로서 특별당비로 납부하는 상품 및 서비스상품을 만들고, 정당의 당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당원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상품을 구입 또는 가입하여 얻어지는 수익금의(당원의 구입 또는 가입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그 이익 발생에 대한 담보책임을 해당 당원이 지는) 일부를 해당 당원이 그 상품이나 서비스상품을 구입 또는 가입하면서 한 동의에 기해 본인의(구입자 또는 가입자) 이름으로 정당에 납부하는 특별당비를 정당이 수취하는 행위가 합법인지 여부.

▷ **의견** : 정치자금법 3조 3호에 따르면 <“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상품을 만들어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구매(또는 부담이 있는 서비스의 가입)에 대한 조건으로서 그 수익금 또는 장차 발생할 수익금의 일부를 구매자(또는 서비스 가입자)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이 속한 정당에 특별당비로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은, 계약 자체에 대한 부담을 당원 각자가 지는 것으로서 '당원 본인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약은 구매자 또는 서비스 가입자가 제공하는 금원의 일부(또는 그가 담보책임을 지는 장차 발생할 수익금의 일부)를 서비스상품 가입계약 또는 상품 구매계약에 기해 기업이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당비납부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해당 상품 및 서비스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그 상품을 구매하는 양자 간의 특별당비 납부에 대한 위임계약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타인의 명의로 납부된 당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10. 8. 6. 국민참여당 사무총장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기업이 고객의 특정 서비스상품 가입이나 상품 구매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그 고객의 명의로 특별당비로 납부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제31조에 위반될 것임. (2010. 8.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관련법 :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참고 3>

행복한 책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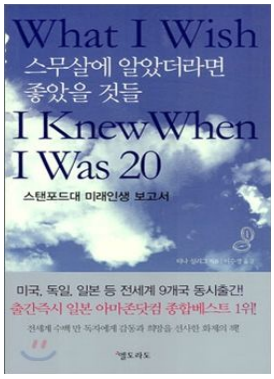

도서명 : 스무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저자명 : 티나 실리그
출판사 : 엘도라도
출판년 : 2010년
페이지 : 256
가 격 : 12,000원

불완전한 성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춘들과 사회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깨달음을 안겨주는 책! 이 책은 미국을 필두로 독일, 일본, 대만, 중국 등 9개국에 판권이 팔렸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2010년 3월 10일 번역출간 직후 일본아마존 종합베스트 1위에 올라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를 한방에 제압했다. 이후 약 한 달간 종합베스트 1위를 고수하며 수많은 일본 독자에게 크나 큰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 대만에서도 단기간에 6만 부 이상이 팔려나가며 종합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다.

이 책이 이런 큰 관심을 끈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이 책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당당하게 행복을 찾고 나름의 성공을 일군 많은 이들의 사례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여러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스탠퍼드 학생들의 흥미로운 실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나 인생선배들이 정해놓은 획일적인

성공의 길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뒤집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 궤도에서 과감히 이탈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무언가를 찾아낸, 삶의 주인들이다. 이런 실제 인물들을 통해 이 책은, 정해진 수순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고 특별한 준비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맹목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잠깐 멈춰서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도록 독려한다.

또한 이 책은 이십대에게 학교 밖 실제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삼십대와 사십대 및 오십대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젊은 날의 열정과 도전정신, 통념을 벗어난 사고방식으로 다시 한 번 당당히 세상과 맞설 용기를 북돋워준다.

이 책은 스탠퍼드 대학의 '기업가정신과 혁신' 강의를 정리한 것으로, 이 강의는 스탠퍼드의 많은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미래 인생을 설계할 실질적인 도구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학생들이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나름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학교와는 다른 실제 세상을 간접적이나마 경험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고 올바른 마인드와 필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이 강의의 취지다.

이 강의실에서 티나 실리그 교수는 다소 황당해 보이는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예컨대 그녀는 학생들에게 5달러와 두 시간을 주고 최대한의 수익을 올려보라고 하거나 클립 열 개 또

는 고무 밴드로 나름의 가치를 창출해보라고 제안한다. 학생들은 제각기 팀을 이뤄 독창성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해 종종 그녀와 학생들 자신마저 깜짝 놀랄 만한 결과물을 내놓는다. 일례로 5달러 프로젝트의 경우 최고 수익을 올린 팀은 주어진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650달러를 벌어들였고, 전체 14개 팀의 평균 수익률은 4,000퍼센트였다고 한다.

티나 실리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독특한 과제를 던지는 이유는 주변을 살펴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그녀는 사소해 보이는 문제 속에 기회가 있으며, 문제가 클수록 기회도 크다고 강조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나 주변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얽매이기보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 기발한 해법을 모색할 때 남다른 경쟁력이 생긴다는 말이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녀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성공을 거둔 인물들의 사례를 보여주고, 우리 주변에는 그런 문제가 얼마든지 널려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자료출처 : 인터넷서점]

의 정 정 보

❖ 발행일 : 2010년 9월 10일

❖ 발행처 : 충청남도의회 법제자료담당관실

법제자료담당관 : 홍민표

법제자료담당 : 조남명

자 료 편 집 : 최성민, 신의식, 안가영,

박광일, 이종섭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전화 (042)606-5029 / 팩스 (042)606-5029